

붙임 1 :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영 산 강 상 류 권 역 하 천 기 본 계 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2020. 12



국 토 교 통 부
익 산 지 방 국 토 관 리 청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목적	2
1.2 계획의 개요	2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근거	2
1.4 사업의 추진경위	2
1.5 계획의 내용	3
1.6 기대효과	6
제 2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7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8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1
제 3 장 대상지역의 설정	29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0
제 4 장 대안의 설정	31
4.1 대안의 종류 선정	32
4.2 대안별 검토 및 비교	33
제 5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5
5.1 평가항목 설정	36
5.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38
제 6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40
6.1 의견 수렴 계획	41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본 과업은 영산강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2항 [별표 2]에 의거 시행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2. 개발기본계획]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시행함.
-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에 의거하여 결정 내용을 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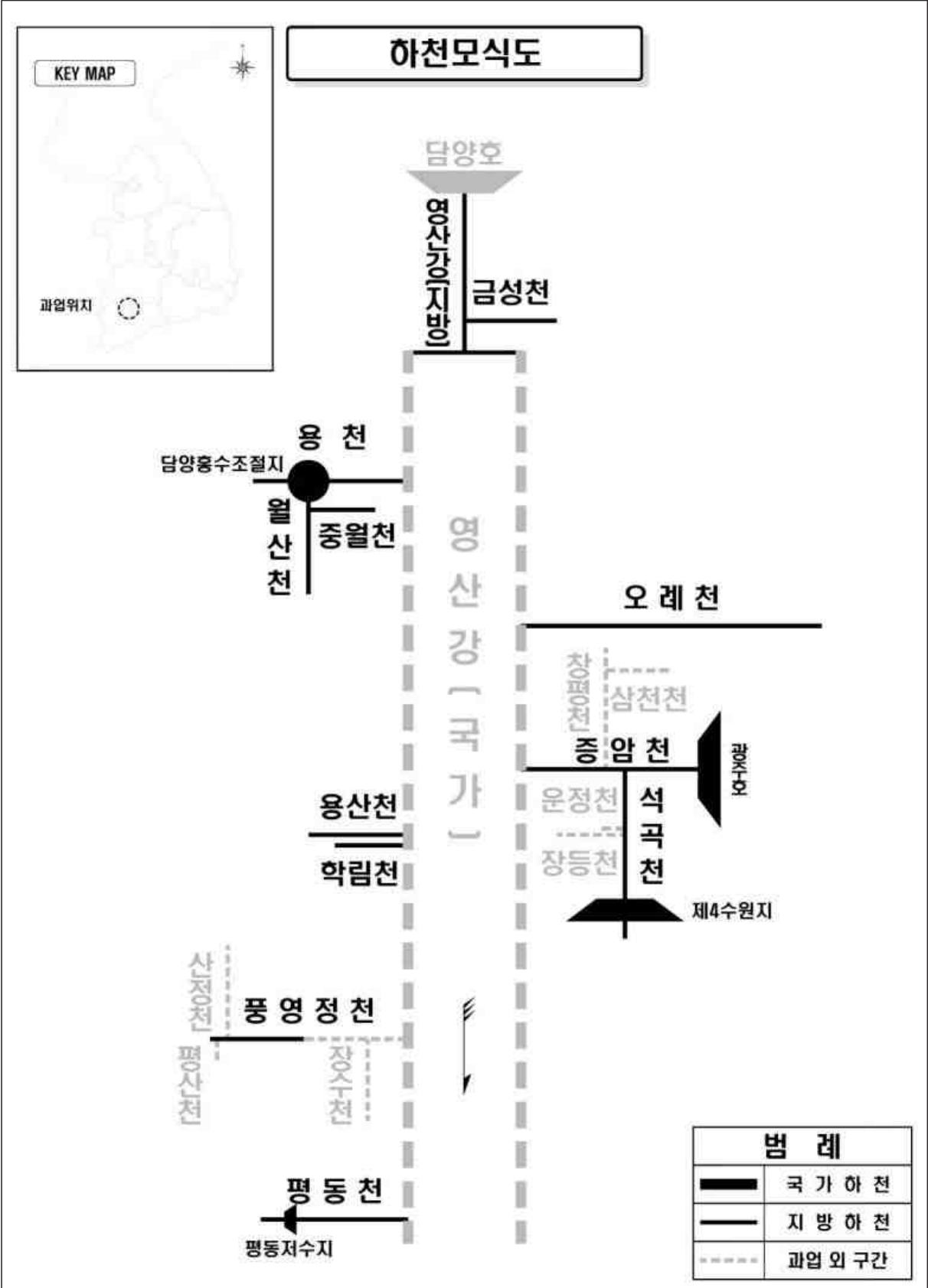
1.4 사업의 추진경위

- 2018. 07. 24.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8. 07. 24. ~ 8. 22. : 관련계획 검토 및 기초조사(유역현황 등)
- 2019. 04. ~ 05. : 유역 및 하천현황 조사
- 2020. 03. 23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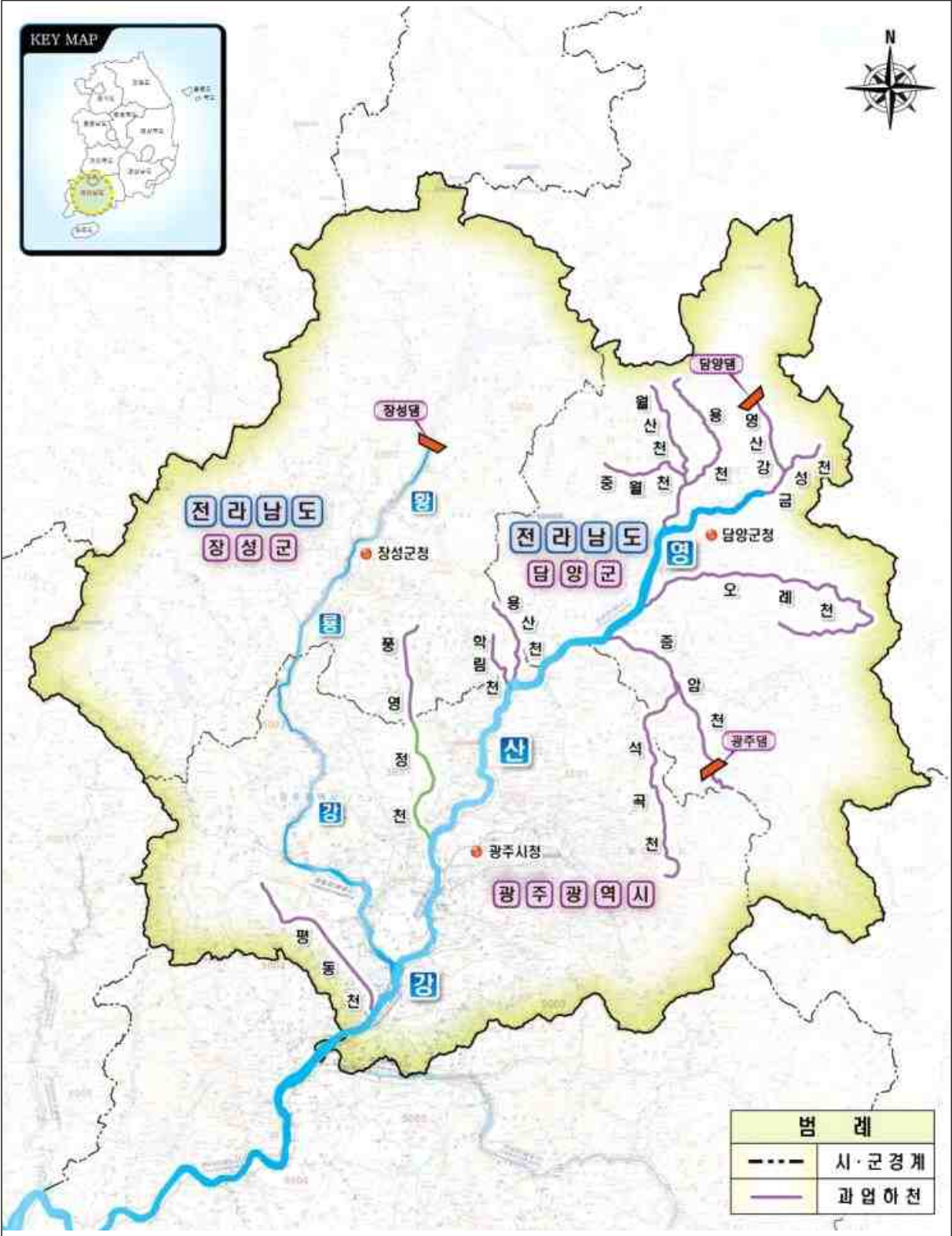
1.5 계획의 내용

- 사업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업 내용 :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아·치수 및 하천환경측면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수자원종합개발 지침 확립
- 하천시설물 설치계획
 - 축제계획, 보축계획, 고수 및 저수호안 조성
 - 시설물 능력검토에 따른 시설물 정비 : 교량 및 보, 낙차공 철거 및 재가설

번호	하천명	하천등급	위치		유로연장 (km)	과업연장 (km)	비고
1	영산강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82-5번지선	19.50	5.54	
			종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곡리 814-3번지선 영산강(국가) 기점			
2	금성천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427번지선	5.75	3.30	
			종점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 579-58번지선 영산강(지방) 합류점			
3	오례천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대덕면 금산리 158-1번지선	21.47	20.60	
			종점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799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4	증암천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가사문학면 지곡리 350-12번지선	22.24	12.50	
			종점	전남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 226-9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5	석곡천	지방	기점	광주광역시 북구 화암동 515-2번지선	14.20	13.05	
			종점	전남 담양군 고서면 동운리 1080-8번지선 증암천(지방) 합류점			
6	용산천	지방	기점	전남 장성군 진원면 상림리 산31-2번지선	7.06	4.76	
			종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945-5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7	학림천	지방	기점	전남 장성군 진원면 용산리 822-1번지선	6.04	3.29	
			종점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671-3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8	풍영정천	지방	기점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345-7번지선	8.62	5.72	
			종점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521-17번지선 광주, 전남도계			
9	평동천	지방	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정동 133-6번지선	10.91	10.06	
			종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덕동 1137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10	용 천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리 435-2번지선	13.10	10.64	
			종점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584-5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11	월산천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월산면 광암리 451-3번지선	7.73	6.26	
			종점	전남 담양군 월산면 화방리 15-28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12	중월천	지방	기점	전남 담양군 월산면 중월리 산59-3번지선	7.40	5.35	
			종점	전남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 856-45번지선 영산강(국가) 합류점			
계			지방하천 12개소		144.02	101.07	



[그림 1.4-1] 하천모식도



[그림 1.4-2] 과업구간 위치도

1.6 기대효과

- 상위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을 반영하여 개수 및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개량하여 최적의 우수배제 기능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 사회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조성
- 환경친화적 하천조성으로 수변경관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치수안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2.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요

- 심의위원장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 심의위원 :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포함 총 11명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의견제출여부
1	위원장	양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국장	-
2	위원	홍00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과장	○
3	위원	이00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위원	○
4	위원	최00	광주광역시 북구 환경과	과장	○
5	위원	정00	광주광역시 광산구 환경생태과	과장	○
6	위원	정00	담양군 생태환경과	팀장	○
7	위원	김00	장성군 환경위생과	팀장	○
8	위원	김00	(주)덕영엔지니어링	위원	○
9	위원	최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	○
10	위원	김00	주민대표	위원	○
11	위원	정00	주민대표	위원	○
12	위원	김00	(사)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위원	○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의안번호 : 제2020-10호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0.10.30 ~ 2020.11.19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여 요청(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1. 평소 우리 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불임과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께서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사업부서(우리 청 하천공사과)에서 배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

가. 안 건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나. 기 간 : 2020.10.30.(금)~11.19.(목)

다. 구 분 : 서면심의

라. 제출서류 : 심의의결서, 보안 및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마. 제출방법 : 전자우편 송부(김창용, cykim419@korea.kr)

바. 제출기한 : 2020.11.19.(목)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심의비 지급을 위한 서류로 이전에 제출하신 경우 재차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안) 1부.
 2. 환경 심의 의결서 1부.
 3. 보안 및 청렴서약서 1부.
 4. 심의 자료 1부(별도송부). 끝.

< 계속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심의위원님 귀하

주무관 주무관 건설관리과장 건설안전국장 전경 2020. 10. 30.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2993 (2020. 10. 30.) 접수

우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http://www.molit.go.kr/irocm>

전화번호 063-850-9422 팩스번호 063-850-9460 / cykim419@molit.go.kr / 비공개(5,6)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2 - 2

2.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국토교통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수신 하천공사과장 (경유)			
제목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 알림(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1. 건설관리과-2994(2020.10.30.)호의 관련입니다.			
2. 귀 과에서 요청한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3. 심의수수료 산출내역 1부. 끝.			
건 설 안 전 국 장			
주무관	주무관	건설관리과장	건설안전국장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3556 (2020. 12. 15.) 접수 하천공사과-4873 (2020. 12. 15.)			
우 5461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 27(남중동)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http://www.molit.go.kr/irocm			
전화번호 063-850-9422 팩스번호 063-850-9460 / cykim419@molit.go.kr / 비공개(5)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영산강 상류권역 지방하천 12개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계획 수립 요망
- 영산강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 유역개발 및 하천개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하천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요망
- 수해예방 등 치수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원형 보전 요망
- 공사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예측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 악영향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민원이 제기 시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 별도 대책 신속한 강구·조치로 환경피해 최소화 요망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 요망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검토 결과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 부분 검토 요망
- 광주광역시와 홍수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영산강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 자료를 제시
- 계획지구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지역 설정 요망
- 유사한 자연환경 특성을 갖는 하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

3. 대안

- 공사 시 및 운영 시 적정 소음저감 대책 수립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각종 현황 및 상위·관련계획 등 반영하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 선정된 대안에 대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 요망
- 하천구간별 지구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각종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의 대안을 설정하고, 구체적 근거(도면 등 포함) 제시 요망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 최소화하고, 하천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 생태적 연결성 확보 대안 제시 요망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시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최근('20.8월) 집중호우 발생 시 확률강우량을 참고하여 치수계획 기준빈도 상향 조정(200년 이상)을 검토 요망

- 제방 축제 중 계획수립 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시행 요망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자산 및 지형·지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 필요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 포함 및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 설정근거·사유 구체적 제시 요망
-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의 현지·문헌조사 결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 설정 및 환경영향 등 예측하여 결과 제시 요망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결과 제시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계한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 계획 수립 요망
- 하천의 수량·수위 산정 시 유역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 적용하여 관련 계획 검토·제시 요망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 보전관리계획 수립 요망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 비교 가능하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 제시 요망
- 대상지역은 주거지 및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 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하고 평가항목 또한 정밀하게 조사하여 반영 요망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중암천(광주), 석곡천(담양), 용천(담양) 지역은 공사시행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후 추진 필요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 진행 요망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수렴된 의견을 사업시행 시 반영 요망

6. 기타사항

- 담양 습지 상류 및 담양 홍수조절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 필요
- 본 사업 관련 문헌·현지조사 등 환경현황 자료, 환경영향예측에 활용하는 측정결과 등은 가장 최신 자료를 인용·사용하여 평가서 작성 요망
- 본 사업 계획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영분B)으로 계획수립 시 총량관리부서와 협의 요망

붙임 : 위원별 심의 의결서 1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팔 의 건		의견없음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자산 및 지형·지질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증암천(광주), 석곡천(담양), 용천(담양) 지역은 공사시행 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후 추진 필요
	6. 기타 사항	담양 습지 상류 및 담양 홍수조절지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반영 필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5일

심의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 의견있음 / ☐ 의견없음 /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팔 의 건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2. 토지이용 구상안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3. 대안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6. 기타 사항
	붙임1-2 심의의견서 참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심의위원 : 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서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영산강 상류권역 지방하천 12개소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임
- 하천의 이·치수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되 현재의 자연하천지형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하천정비계획 시행으로 인한 영향 범위,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해당하천에 대하여 과거 수립한 하천기본계획 현황 제시
 - 도면에 기수립구간 연장 및 수립시기, 계획빈도 등 작성·제시
 - 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수해 및 재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계획 적정성 및 필요성 제시

2. 대안 및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계획의 목적 및 기대효과, 하천유역 현황, 토지이용현황, 홍수 등 재해현황, 상위·관련계획 등을 반영하여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안에 대해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치수안전도, 지구지정, 친환경적 계획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방법 대안(구조적, 비구조적, 구조적+비구조적) 설정
- 하천구간별 지구 지정 시 필요성 및 수요, 하천 현황 및 하천 내 시설물 현황,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 목표 등을 고려하여 하천공간관리계획상 지구[보전(특별, 일반, 완충), 복원, 친수(거점, 근린)지구] 지정의 대안을 설정

하고, 구체적 근거(도면 등 포함)를 제시하여야 함

- 하천 지구지정 현황 및 계획 비교
- 보전 또는 복원지구를 친수지구로 변경하는 구간은 구체적인 사유 제시
- 하상훼손 및 시설물 계획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상·하류 및 주변 지역과의 생태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안 선정 시 재해의 위험성 및 취약성과 생태계훼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점 검토

3. 평가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 범위는 계획수립·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영향권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근거·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천저질 조사는 하천 퇴적물 항목별 오염평가기준상 모든 항목에 대해 실시
- 하천 주변에 서식하는 동·식물상 등의 현지·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수립 시 대안을 설정하고 환경영향 등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생태현황 조사는 가급적 각 분류군별로 적정한 시기(번식기·산란기·생육이 왕성한 시기 등) 및 위치에서 실시
 - 동·식물상 조사는 각 분류군별로 정량·정성적으로 충분히 실시(현지조사표 참조)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수록하고, 조사지점·구역·경로 등을 지형도에 표기
 - 법정보호종 분포현황 및 주요 서식처 등을 고려한 하천정비계획 수립
- 하천 주변에 분포하는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관련 행정계획과 연계하여 하천 내 저감시설 설치계획 등 자연친화적인 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
- 하천의 수량·수위(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 산정, 계획홍수위 등) 산정 시 유역 특성에 적합한 최근 기준을 적용하여 관련 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간별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1/5,000 ~ 1/25,000 지형도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생태자연도, 야

생물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환경정보 제시

-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계획구간의 경우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

- 현재 경관과 사업 시행 전·후 경관상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망점(원경, 중경, 근경)별로 경관 시뮬레이션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대상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지·홍보
- ※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용어 및 그림·시뮬레이션 자료 등을 활용

5. 기 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을 제시하고 동 계획수립권자가 하천 관리청이 아닐 경우 위임 규정을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해당 하천의 개별 하천점용 허가 시 사업시행자 및 허가권자를 제시하여야 함

2020. 11. 18.

심의위원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통보서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위 치 : 영산강 등 지방하천 12개소(L=101.07km)

□ 총 괄 의 건

- 영산강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시행 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며, 유역개발 및 하천개수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도 및 수문·수리특성 변화와 하천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수해예방 등 치수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하천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가급적 원형 보전하여야 함
- 공사시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발생 또는 예상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검토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조치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대상지역 설정을 검토한 결과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재난(집중호우, 태풍 등) 발생 시 안전관리 부분이 검토되어야 함.
- 광주광역시는 홍수대응능력 강화의 일환으로 영산강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구축(*한국판 뉴딜종합계획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현황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현재의 수질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수처리계획 등 하천수질과 관련된 각종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시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최근(2020년.8월) 집중호우 발생 시 확률강우량을 참고하여 치수계획 기준빈도 상향 조정(200년 이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대상지역은 주거지 및 교육시설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민불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범위를 최대한 넓게 설정하고 평가항목 또한 정밀하게 조사하여 반영하기 바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하며, 수렴된 의견을 사업시행시 반영하여야 함

6. 기타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문헌·현지조사 등 환경현황 자료, 환경영향예측에 활용하는 측정결과 등은 가장 최신 자료를 인용·사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기 바람.

2020. 11. .

심의위원 최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평가준비서에 대한 별다른 의견없음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의견없음
	6. 기타 사항	77페이지, 4.2.3. 수요공급 대안의 비교 및 평가, [표4.2-5]수요 공급에 따른 대안검토 선정사유란과 관련, “ <u>섬진강</u> ”의 홍수피해~, “ <u>섬진강</u> ” 하구 기준으로~ 기재 부분은 “ <u>영산강</u> ”으로 수정 검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4일

심의위원 : 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팔 의 건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하천의 생태·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기 바람 대상지역은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 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없음
	3. 대안	제방 축제 중 계획수립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
	4. 평가 항목·범위 · 방법 등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은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적정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공람·공고 시행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고지 및 홍보 바람
	6. 기타 사항	의견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심의위원 : 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 의견있음 / ☒ 의견없음 /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계획수립시 동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항목별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계획지구와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계획 수립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을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대안선정시 환경훼손 및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강구하여야 함
의견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은 계획의 특성과 입지여건 및 환경현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평가범위 및 방법등의 선정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립시 관계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영향 대상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함
의결	6. 기타 사항
	본 사업 계획지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영본B)으로 계획수립시 총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8 일

심의위원 : 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 의견있음 / ☐ 의견없음 /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의 결		항목별 평가준비서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진행 요망함.
항 목 별 의 결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매뉴얼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수생태계 변화 예상되는 지점 포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사업구간을 통과하는 지자체의 토지이용 현황은 열거되어 있지만 '토지이용 구상안'은 전혀 평가준비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3. 대안	- 대안의 선정·미선정 항목 설정은 적정함. - 대안의 계획비교시 생활환경의 안전성부문의 '비점오염원' 대안이 누락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설정·평가범위·방법 설정 : '수환경의 보전(평가항목)' 선정사유 및 주요검토내용에 토사유출,공사인부 오수 뿐 아니라 주변 비점오염원의 수계 유입시 하천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검토 포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이 적정함.
	6. 기타 사항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5 계획의 기대효과'에 하천유역의 치수·이수 뿐만아니라 '유역의 수질개선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 월 15 일

심의위원 : 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 본 건은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101.07km)의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계획 수립의 타당성 입증 및 최적대안 선정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상지역의 범위가 매우 넓어 각 하천별 자연환경의 특성이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모든 하천에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기 보다는 유사한 자연환경 특성을 갖는 하천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계획수립의 필요성 - 하천별로 건설되는 구조물(호안, 제방, 횡적 구조물 등)의 설치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타 사항	- 의견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심의위원 : 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22 11 월 28 02:43p

p.1

From:

To:90625710646

27/11/2020 15:56 #098 P.001/002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 의견있음 / ☐ 의견없음 /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 팔 의 건	
항 목 별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 구상안
	3. 대안
	4. 백관부곡개발사업
	6. 기타 사항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 월 일

심의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의 건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 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 · 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기타 사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 2월 2일

심의위원 : 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10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 안 건 명 :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 안전번호 / 심의일시 : 제2020-10호 / 2020.10.30.(금)~11.19.(목) / 서면심의
- ☐ 심의의결

☒ 안전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팔 의 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원안 동의
	2. 토지이용 구상안	원안 동의
	3. 대안	원안 동의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원안 동의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주민의견 수렴은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없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심의위원 : 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제3장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정량적 및 정성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전성,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범위를 설정하였음.
- 본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2018-205호”에 제시한 평가 항목별로 검토하였음.

〈표 3.1 - 1〉 평가항목별 검토대상지역 설정

평가항목		평가사항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계획하천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대안 비교를 통한 적정성 검토		◦ 계획하천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육상·육수동물상에 미치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 산	◦ 하천 정비시 주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 는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하천 정비시 하천지형 변화영향	◦ 계획하천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미치는 경관 변화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 하천 정비로 인한 계획하천의 부유토사 증가에 의한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수리·수문	◦ 하천 정비시 홍수량 및 홍수위 변화 등 수리·수문변화 및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수계
입지의 타당성	□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계획 하천 인근 기상자료 분석, 대기질 항목의 분석 기초자료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대기질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대기질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 지역
		소음·진동	◦ 하천 정비시 주변 지역의 소음·진동 영향	◦ 계획하천 및 주변 정온 지역
		토양	◦ 하천 정비시 토양오염 영향	◦ 계획하천
	자원·에너지 순환의적정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하천 정비시 건설폐기물, 생활 폐기물 등 발생 및 처리방안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친환경적 토지이용	토지 이용	◦ 계획 하천의 토지이용 변화	◦ 계획하천	

제4장 대안의 설정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선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본 계획의 대안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의거하여 <표 4.1-1>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 중 계획비교와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을 선정하여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음.

<표 4.1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항목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x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x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x

<표 4.1 - 2> 대안 선정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대안 선정 제외 사유
입 지	◦ 본 계획은 종합계획수립 특성상 하천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계획으로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시기·순서	◦ 본 계획은 계획홍수위와 기존 제방고를 비교·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과 홍수시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 가능한 빠른 시기가 최적의 대안임
기 타	◦ 본 계획시행에 따른 [기타] 대안은 없으나 향후 하천정비사업시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시시 적극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4.2 대안별 검토 및 비교

가. 계획비교에 대한 검토

-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함.

〈표 4.2 - 1〉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

구 분	대 안	
	대안1 : 현상태 유지(No Action)	대안2 :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Action)
장 점	◦ 현재의 하천을 유지함으로써 인위적인 계획 없음 ◦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분진 등의 문제 발생 소지 없음 ◦ 공사비 발생하지 않음 ◦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수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 사업 시행에 따라 하천 및 인근지역 정비로 자연 재해 대비 ◦ 매년 일어나는 수해에 대한 피해를 경감시킴으로써 수해복구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손실 경감 ◦ 하천정비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시행으로 생활환경 증진 ◦ 하천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하천의 수변 경관 개선
단 점	◦ 자연재해(집중호우 등)시 인근지역의 침수 등이 예상됨 ◦ 홍수, 태풍 등의 수해에 대한 피해 복구 비용으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하천공간의 관리 및 이용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하천 정비공사시 일시적으로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됨 ◦ 제방공사로 인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줄 것으로 예상됨

나. 수단·방법에 대한 검토

-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은 이·치수 및 환경 달성을 위한 방법을 대안으로 선정함.

〈표 4.2 - 2〉 수단·방법에 따른 대안 검토

구분	대안1 (No action)	대안2 (action)		
		제방축제	제방보축	제방보축+하도정비
장·단점	◦현상태 유지에 따른 필요 공사비 없음 ◦치수안정성 결여	◦제방축제로 하천공간 확보 (홍수시 안정성 확보) ◦제내지 편입면적증가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	◦제방보축으로 하천공간 확보(홍수시 안정성 확보) ◦제내지 편입면적증가 ◦기존 제방을 활용하여 경제성 확보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	◦제방보축 및 하도정비 (준설)로 하천공간 확보 (홍수시 안정성 확보) ◦제내지 편입면적 최소화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변화 ◦하천내 취수시설물 보호 대책 필요 ◦하천내 구조물(보, 낙차공 등) 신설, 보수 및 보강 필요
선정	-	◎		
선정 사유	◦제내지 편입면적이 다소 증가하나 수생생물의 서식환경 및 취수시설물 보호를 위해 계획하천을 고려한 축제, 보축, 보축+하도정비계획 수립			

다. 수요·공급 대안 검토

- 수요·공급 대안은 현상태 유지시(대안1)과 금회 수리·수문분석 시행을 통한 계획수립(대안2)로 구분하여 비교·검토하였음.

〈표 4.2 - 3〉 수요·공급에 따른 대안 검토

구 분	대안1(NO action)	대안2(action)
기준빈도	◦현상태 유지	◦치수계획 기준빈도 80년 이상 (금회 수리·수문분석 시행을 통한 계획수립)
장 점	◦편입부지 및 공사비 미발생	◦치수안정성 확보 용이 ◦설계빈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향에 부합하는 치수계획 수립가능
단 점	◦하천설계기준에 미달되는 하천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 우려 ◦치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상대적으로 공사규모가 늘어나게 되어 공사 대상지역 증가 ◦치수사업의 규모 공사비 증가
선 정	-	◎
선정사유	◦영산강의 홍수피해 경감 및 방지를 위한 계획 홍수량은 치수안전도 설정기준, 하천의 중요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하천관리처의 치수관리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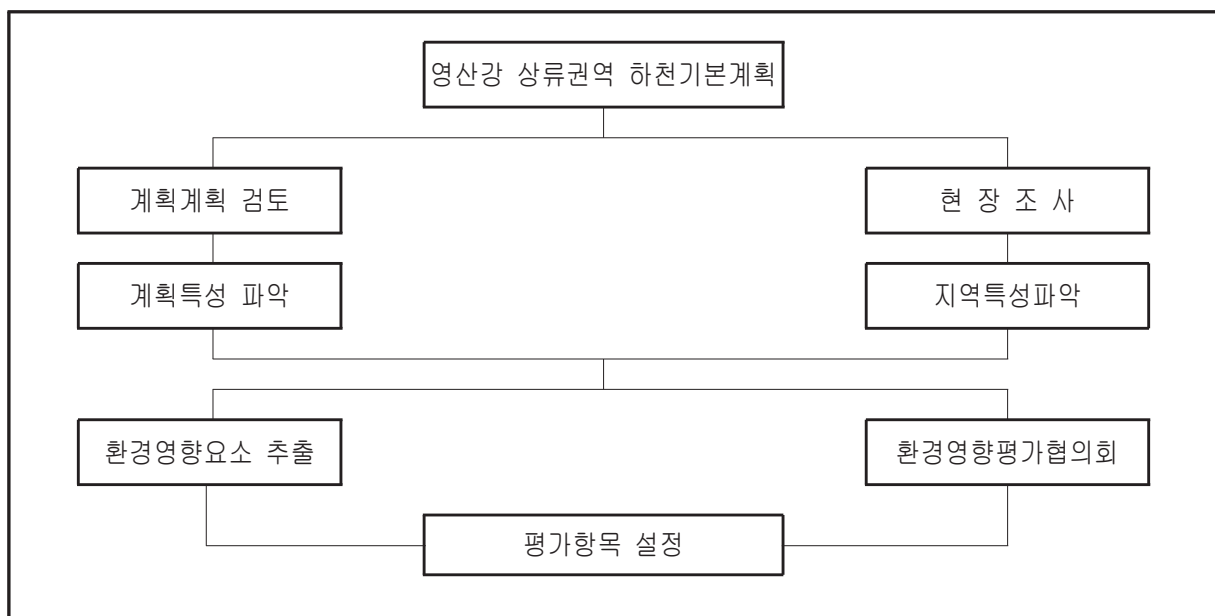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제5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 설정

- 본 계획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18-205호」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현황조사와 자료조사를 통해 지역개황을 파악한 후 공사시와 운영시 단계로 구분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절차를 이용하여 추출함.



(그림 5.1 - 1) 평가항목설정 흐름도

<표 5.1 - 1> 단계별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구 분	환경영향요소
공사단계	-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 소음·진동, 폐유발생 - 지형의 변형, 절·성토 - 공사시 토사유출 및 부유물질 농도 증가 - 수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자연환경자산 훼손 여부
운영단계	- 하천 수량 및 수질관리,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 하천 생태계 보호 - 수리·수문 변화

나. 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을 참고하고, 계획의 특성, 인근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였음.

〈표 5.1 - 2〉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분 야		세부 항목	결정결과	사 유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평가	◦식물상, 식생 및 동물상의 변화
		자연환경자산	평가	◦계획하천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	◦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탈면 발생 등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락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경 관	평가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영향
	수환경의 보전	수질 (지표·저질)	평가	◦공사시 토사유출로 이하하여 수계에 미치는 영향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수리·수문	평가	◦계획시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파악
		해양환경	제외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경미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평가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평가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공사장비로 인한 오염 물질 발생
		악 취	제외	◦본 계획으로 인한 악취영향 없음
		토 양	평가	◦공사시 토양에 미치는 영향
		소음·진동	평가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발생
		위생공중보건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전파장애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애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제외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미미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제외	◦본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미미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	◦공사시 지장물 철거, 수목 훼손, 공사인부에 의한 폐기물 등 발생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평가	◦계획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
		인구주거	제외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주거 변화 없음
		산업	제외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5.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가. 평가범위 설정

- 본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2013」 및 행정규칙(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정하였음.
- 본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 등에 대하여 영향예측을 수행하여, 예측 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5.2 - 1〉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평 가 항 목		평가 범위 및 방법 선정		검토내용
		지역(범위)	방 법	
자연 환경의 보전	동·식물상	◦계획하천 ◦주변지역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식물상 및 식생현황, 육상·육수동물상 현황 파악 및 변화 예측
	자연환경 자산	◦계획하천 ◦주변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사업계획 분석	◦자연환경자산 현황 파악 및 미치는 영향 분석
	지형·지질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공사계획평면도	◦지형·지질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사면 안정성 등 예측
	경 관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경관변화 예측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검토
	수 질	◦계획하천	◦현지 및 문헌조사	◦수질 및 수리·수문 현황 파악
	수리·수문	◦하류수계	◦수리·수문 해석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예측 ◦계획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 상	◦계획하천	◦인접 기상대 기상자료 분석	◦기초자료 활용(대기질 항목)
	대기질	◦주변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공사시 공사장비 및 토공작업에 의한 영향 예측
	토양	◦계획하천 ◦주변지역	◦문헌조사 ◦토양오염시 처리검토	◦토양현황 파악, 토양오염시 처리방법 검토
	소음·진동	◦계획하천 ◦주변지역	◦소음·진동 예측식 -거리감쇠 공식	◦소음·진동 현황, 발생원 및 공사시 정온 시설 영향 범위 예측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
	친환경적 자원순환	◦계획하천 ◦주변지역	◦문헌조사 ◦원단위 이용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계획하천 ◦주변지역	◦현지 및 문헌조사	◦토지이용 현황 파악
			◦사업계획 분석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파악

나. 환경현황조사계획

- 본 과업에 대한 환경현황 조사항목은 하천 수질 및 저질, 자연생태환경으로 계획함.
- 하천 저질에 대한 현황조사는 과업기간 내 1회 조사하며, 하천 수질 및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현황은 과업기간 내 3회 조사를 계획함.

〈표 5.2 - 2〉 환경현황조사 계획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	횟수	비고
환경질 측정	하천수질	◦ 현지조사 - 유량, 수온, pH, BOD, COD, TOC, SS, DO, T-P, T-N, 총대장균군수, Chl-a, Cd, As, CN, Hg, Pb, Cr⁶⁺, ABS 등 총 19개항목	27지점	3회	
	하천저질	◦ 현지조사 - 입도분포, 강열감량, 유화물, T-N, T-P, COD, Cd, Cu, As, Hg, Pb, Cr, Zn, Ni 등 총 14개 항목	27지점	1회	
동·식물상 조사	육상 동·식물상	◦ 현지조사 - 식물상과 식생 - 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	3회	
	육수 동·식물상	◦ 현지조사 - 육수동물(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3회	

※ 측정지점 및 조사횟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제6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6.1 의견수렴 계획

6.1.1 초안 공고·공람 계획

- 본 과업인 영산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할 계획이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평가서 초안을 공개하여 공람할 계획임.
- 또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해당권역의 행정구역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비치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일~40일 이내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구체적인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는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토록 할 계획임.

〈표 6.1 - 1〉 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고·공람 계획(안)

구 분	공람장소(안)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전라남도 담양군, 장성군, 광주광역시	3개 시·군

6.1.2 설명회 및 공청회 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기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장소는 추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종 략 ~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6.1.3 관계기관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관계법령에 따라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도지사(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관할 시장·군수에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의견을 수렴할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6.1.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공개

-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게시할 것임.